장애인이 행복한 나라,
따뜻한 대한민국

보건복지부
www.mohw.go.kr

2016
장애인복지사업 안내



보건복지부
www.mohw.go.kr

위험할땐 119
힘겨울땐 129

CONTENTS

01 연금·수당

1-1. 장애인연금(1, 2급 및 3급 중복장애) 04
1-2.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04

02 보육·교육

2-1.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05
2-2.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05

03 의료지원

3-1. 장애인 의료비 지원 06
3-2.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06
3-3.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07
3-4. 장애인 검사비 지원 07
3-5. 발달재활 서비스 07
3-6. 언어발달 지원 07
3-7.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07
3-8. 보장구 건강보험급여(의료급여) 적용 08
3-9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08
3-10.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08



장애인이 행복한 나라,
따뜻한 대한민국



04 서비스

4-1. 장애인 활동 지원 09
4-2.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(1~3급) 09
4-3.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09
4-4.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09
4-5.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10
4-6.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(자막방송 수신기, 화면해설 방송 수신기, 난청노인용 수신기) 10
4-7.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11
4-8.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11
4-9.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11

05 일자리·융자지원

5-1. 장애인 고용서비스 12
5-2. 장애인 일자리 지원 12
5-3.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13
5-4.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13
5-5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3
5-6.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13

06 공공요금 감면

6-1.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14
6-2. 고궁, 능원, 국 ·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 · 공립공원, 국 · 공립 공연장,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14
6-3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14
6-4. 철도 · 도시철도 요금 감면 14
6-5. 유선통신 요금 감면 14
6-6. 이동통신 요금 감면 15
6-7. 시 ·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15
6-8. 항공요금 할인 15
6-9.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15
6-10.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16
6-11. 전기요금 할인 16
6-12. 도시가스요금 할인 16
6-13.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6

07 세제혜택

7-1.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7
7-2.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(종전 등록세 포함)자동차세 면제 17
7-3.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7
7-4.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17
7-5. 소득세 공제 17
7-6. 장애인 의료비 공제 18
7-7.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8
7-8. 장애인 보험료 공제 18
7-9. 상속세 상속 공제 18
7-10.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8
7-11.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9
7-12.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19
7-13.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19



08 지역사회 복지사업 (재활시설) 및 기타

8-1. 주간 보호시설 운영 20
8-2.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20
8-3. 장애인 복지관 운영 20
8-4.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20
8-5.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20
8-6.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20
8-7.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20
8-8.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1
8-9. 수화통역센터 운영 21
8-10.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21
8-11.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1
8-12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21
8-13.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운영 21
8-14.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22
8-15.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2

09 <참고>소득기준표

2016년도 기준중위 소득 22
2016년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2

01 연금·수당



<table>
<tr><th>주요사업명</th><th>지원대상</th><th>지원내용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
<td>1-1.
장애인연금
(1, 2급 및
3급
중복장애)</td>
<td>•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*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*중증장애인 : 1급, 2급 및 3급 중복장애
• 2016년도 선정기준액
단독가구 : 100만원
부부가구 : 160만원</td>
<td>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계</th><th>기초</th><th>부가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</td><td>18~64세</td><td>284,010</td><td>204,010</td><td>80,000</td></tr>
<tr><td>65세 이상</td><td>284,010</td><td></td><td>284,01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주거·교육급여 수습자, 차상위</td><td>18~64세</td><td>274,010</td><td>204,010</td><td>70,000</td></tr>
<tr><td>65세 이상</td><td>70,000</td><td></td><td>70,0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차상위 초과</td><td>18~64세</td><td>224,010</td><td>204,010</td><td>20,000</td></tr>
<tr><td>65세 이상</td><td>40,000</td><td></td><td>40,000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읍·면·동에 신청</td>
</tr>
<tr>
<td>1-2.
장애수당 및
장애아동
수당</td>
<td>• 장애수당
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-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※ 다만, 만18~만20세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) 중인 자는 제외
*경증장애인 : 3급, 4급, 5급, 6급
• 장애아동수당
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*중증장애인 : 1급, 2급 및 3급 중복장애
*경증장애인 : 3급, 4급, 5급, 6급
※ 다만, 만18~만20세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(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) 중인 자는 포함</td>
<td>• 장애수당
–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 : 1인당 월4만원
– 보장시설 수급자(생계, 의료) : 1인당 월2만원
• 장애아동수당
– 기초(생계,의료,주거,교육) 및 차상위 : 1인당 월4만원
– 보장시설수급자(생계, 의료) : 1인당 월 2만원
· 장애아동수당
– 기초(생계, 의료) 중증 : 1인당 월20만원
– 기초(주거, 교육), 차상위 중증 : 1인당 월15만원
– 기초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 경증 : 1인당 월10만원
– 보장시설(생계, 의료) 중증 : 1인당 월7만원</td>
<td>읍·면·동에 신청</td>
</tr>
</table>

02 보육·교육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2-1.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	• 만0세 ~ 만12세 장애아동 –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(만5세 이하만 해당) 제출자 –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·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(만3세 ~ 만8세까지만 해당)	• 지원단가 – 종일반 : 43만8천원/월 – 방과후 : 21만9천원/월 – 만3~5세 누리장애아보육 : 43만8천원/월 ※ 가구소득수준과 무관	읍 · 면 · 동에 신청
2-2.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	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	•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– 기초학습, 인문, 사회 및 체험, 보건 및 가족 등	제공기관에 신청

03 의료지원



주요사업명	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3-1. 장애인 의료비 지원		•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 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•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(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)	•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(비급여 제외) –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• 2차, 3차 의료기관 진료 – 의료(요양)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%(차상위 14%, 암환자 5%, 입원 10% 등)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%는 지원하지 않음	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
3-2.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	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	•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	•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	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
	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	• 등록장애인	•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·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(1구간)을 적용	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
	산출 보험료 경감	•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	• 장애등급 1~2급인 경우 : 30% 감면 • 장애등급 3~4급인 경우 : 20% 감면 • 장애등급 5~6급인 경우 : 10% 감면	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
	장기요양 보험료 경감	• 등록장애인 1~2급	• 장기요양보험료의 30% 감면	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3-3.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	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	•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–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: 4만원 – 기타 일반장애 : 1만5천원 ※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	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
3-4. 장애인 검사비 지원	•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,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서비스 재판정 및 의무 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•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	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 –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•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–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• 직권 재진단 대상 –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	읍 · 면 · 동에 신청
3-5. 발달재활 서비스	• 연령기준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• 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언어, 청각, 시각 장애아동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% 이하 • 기타요건 –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– 다만,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(검사자료 포함)로 대체 가능	• 매월 14만원 ~ 22만원의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• 언어 · 청능, 미술, 음악, 행동 · 놀이 · 심리, 감각 ·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	읍 · 면 · 동에 신청
3-6. 언어발달 지원	• 연령기준 :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(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· 청각 · 언어 · 지적 · 뇌병변 · 자폐성 등록 장애인) • 소득기준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	• 매월 16만원 ~ 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•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 · 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	읍 · 면 · 동에 신청
3-7.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	•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대상 / 품목 / 지원기준액 / 내구연한 1-3급 뇌병변 · 심장장애인 /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/ 35만원 / 3년 1~3급 지체 · 뇌병변 장애인 /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/ 5만원 / 1년 식사도구(칼-포크, 젓가락 및 빨대) / 5만원 / 1년 머그컵, 유리컵, 컵 및 빨대접시 / 5만원 / 1년 접시 및 그릇 / 5만원 / 1년 음식보호대 / 5만원 / 1년 기립훈련기 / 150만원 / 3년 이동변기 / 60만원 / 5년 1~3급 심장장애인 /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/ 35만원 / 3년 지체 · 뇌병변 장애인 / 보행차 / 20만원 / 5년 좌식형 보행차 / 20만원 / 5년 탁자형 보행차 / 20만원 / 5년 목욕의자 / 60만원 / 5년 휴대용 경사로 / 30만원 / 8년 시각장애인 / 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 / 2만원 / 2년 음성시계 / 2만원 / 2년 영상확대비디오독서확대기) / 80만원 / 2년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 / 80만원 /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/ 50만원 / 3년 청각장애인 / 시각신호표시기 / 15만원 / 2년 진동시계 / 3만원 / 2년 헤드폰(청취증폭기) / 12만원 / 2년	읍 · 면 · 동에 신청

<table>
<tr><th>주요사업명</th><th>지 원 대 상</th><th>지 원 내 용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
<td>3-8.
보장구
건강보험
급여
(의료급여)
적용</td>
<td>• 등록장애인

「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」 제출 시 첨부서류
1.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 1부
※(건강보험 가입자)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경우 보장구 구입전 공단에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급여신청서를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
2.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·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
※ 지팡이 · 목발 · 수동휠체어(2회 이상 신청시) · 흰지팡이 및 소모품(전지)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
※ (건강보험 가입자)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 및 전 · 후방 지지워커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
3.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·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

「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」 제출기관
1. 건강보험 : 국민건강보험공단
※ 보장구 유형별로 첨부서류가 상이하므로, 국민건강보험공단 (http://minwon.nhis.or.kr, 1577-1000)으로 문의
2. 의료급여 : 시 · 군 · 구청
※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</td>
<td>• 건강보험대상자 :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
*전동휠체어 · 전동스쿠터 ·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

• 의료급여수급권자 :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
〈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〉
<table>
<tr><th>분류</th><th>기준액(원)</th><th>내구연한(년)</th></tr>
<tr><td>• 지체 · 뇌병변 장애인용 지팡이</td><td>20,000</td><td>2</td></tr>
<tr><td>• 목발</td><td>15,000</td><td>2</td></tr>
<tr><td>• 수동휠체어</td><td>480,000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• 의지 · 보조기</td><td>유형별로 상이</td><td>유형별로 상이</td></tr>
<tr><td>• 시각장애용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– 저시력보조안경</td><td>100,000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– 돋보기</td><td>100,000</td><td>4</td></tr>
<tr><td>– 망원경</td><td>100,000</td><td>4</td></tr>
<tr><td>– 콘택트렌즈</td><td>80,000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– 의안</td><td>620,000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• 흰지팡이</td><td>14,000</td><td>0.5</td></tr>
<tr><td>• 보청기</td><td>1,310,000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• 체외용인공후두</td><td>500,000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• 전동휠체어</td><td>2,090,000</td><td>6</td></tr>
<tr><td>• 자세보조용구</td><td>1,500,000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• 정형외과용 구두</td><td>250,000</td><td>2</td></tr>
<tr><td>• 욕창예방방석</td><td>250,000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• 욕창예방매트리스</td><td>400,000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• 이동식전동리프트</td><td>2,500,000</td><td>5</td></tr>
<tr><td>• 전방지지워커</td><td>50,000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• 후방지지워커</td><td>300,000</td><td>3</td></tr>
<tr><td>• 소모품(전지)</td><td>160,000</td><td>1.5</td></tr>
</table>
</td>
<td>신청기관
건강보험 :
공단
의료급여 :
시 · 군 · 구청

※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

(공단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(http://minwon.nhis.or.kr) 참조)</td>
</tr>
<tr>
<td>3-9.
장애인
의료재활
시설 운영</td>
<td>• 등록장애인</td>
<td>• 지원 내용
– 장애의 진단 및 치료
– 보장구 제작 및 수리
–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
•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· 군 ·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,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</td>
<td>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을 제시</td>
</tr>
<tr>
<td>3-10.
여성장애인
출산비용
지원</td>
<td>• 장애등급 1~6급으로 등록한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(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,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 · 사산의 경우 포함)</td>
<td>• 출산(유산, 사산포함)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</td>
<td>읍 · 면 · 동에 신청</td>
</tr>
</table>

04 서비스

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4-1. 장애인 활동 지원	• 만 6세 ~ 만 64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~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자	• 월 한도액 – 기본급여 : 등급별 월 43~106.3만원 – 추가급여 : 독거여부, 출산여부,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.1~2,464천원 추가급여 제공 • 본인부담금 – 생계 · 의료급여 수급자 : 면제 – 차상위계층(생계 · 의료급여수급자 제외) : 2만원 –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~15% + 추가급여의 2~5% 차등 부담 · 기본급여(1~4등급) : 25.8~102.2천원 (국민연금 기초연금액으로 상한 설정) · 추가급여(독거, 출산, 학교 · 직장생활 등) : 1.8~123.2천원	읍 · 면 · 동,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
4-2.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(1~3급)	• **연령기준** :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• **장애유형**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근거한 1급, 2급, 3급 장애아동 • **소득기준** : 전국가구평균소득 100% 이하	• 1아동당 연 480시간 범위내 지원 •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(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)	읍 · 면 · 동에 신청
4-3.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	• 등록장애인 1) 무료이용 대상자 – 등록장애인으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–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–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2) 실비이용 대상자 –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	•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· 요양 ·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	시 · 군 · 구에 상담
4-4.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	•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• **소득조건** – **기준 중위소득*** 이하인자 *보건복지부 고시 「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· 의료급여 산정 기준과 최종 보장수준」의 기준 중위 소득	•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료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	시 · 군 ·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4-5.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	•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, 직계존 · 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 · 자매, 형제 ·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•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「출입국관리법」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※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포함 •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•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8조 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•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•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	•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※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 되며,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	읍 · 면 · 동에 신청
4-6.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(자막방송 수신기, 화면해설방송 수신기, 난청노인용 수신기)	• 시청각장애인, 난청노인 –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	•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 •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•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	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(☎1688-4596)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4-7.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	• 시청각장애인(자막방송, 화면해설방송, 수화방송)	• **시 ·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(자막, 수화, 화면 해설방송) 지원** – 국내 방송사업자(지상파, SO, PP, 종편, 위성 등)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• **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** – 시 · 청각장애인 학생을 위해 EBS 교육방송물을 자막 ·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 (http://free.ebs.co.kr)	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(☎ 02-2142-4442,4445)
	• 발달장애인 (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)	• **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'알기 쉬운 자막 · 음성해설방송'로 재제작하여 보급**	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행 (☎ 02-2142-4442,4445)
4-8.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	•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장애인 (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	• **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**	시 · 도에 문의 및 읍 · 면 · 동에 신청
4-9.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	• 등록장애인 –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 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	• **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(인지대, 송달료, 변호사 비용 등)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** – 무료 법률 상담 – 무료 민사 ·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(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) – 무료 형사변호(단,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 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)	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(☎132 www.klac.or.kr)

05 일자리·융자지원



<table>
<tr><th>주요사업명</th><th>지 원 대 상</th><th>지 원 내 용</th><th>비 고</th></tr>
<tr><td>5-1.
장애인
고용
서비스</td><td>• 등록장애인</td><td>•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–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
–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
–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
–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
• 의무고용사업주(상시 50인 이상)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*
*정부, 공공기관 : 3%, 민간기업 : 2.7% → 2.3%('10~'11), 2.5%('11~'12), 2.7%('13~'14)
–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(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)
–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</td><td>고용노동부
(한국장애인
고용공단)
(☎1588-1519)
※자세한 사항은
홈페이지
www.kead.or.kr
에서 안내</td></tr>
<tr><td>5-2.
장애인
일자리
지원</td><td>•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</td><td>• 급여 및 주요내용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th>근로시간</th><th>급여</th></tr>
<tr><td>장애인
복지
일자리</td><td>공공기관,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 (주차단속, 환경도우미, 보육도우미 등)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</td><td>월
56시간</td><td>월 보수
338천원/
월 15천원</td></tr>
<tr><td>일반형
일자리</td><td>자치단체,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,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</td><td>주5일
40시간</td><td>월 보수
1,261천원
/월 사업주
보험료
135천원</td></tr>
<tr><td>시각
장애인
안마사
파견</td><td>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</td><td>주5일
25시간</td><td>월 보수
1,030천원
/월 운영비
113천원</td></tr>
<tr><td>발달
장애인
요양
보호사
보조</td><td>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 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</td><td>주5일
25시간</td><td>월 보수
790천원/
월 운영비
110천원</td></tr>
</table></td><td>시·군·구
(읍·면·동)
및
위탁기관에서
공개모집</td></tr>
</table>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5-3.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	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	•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• 설치지역 : 시 · 도당 1개소(17개 지역)	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 :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☎02-921-5053
5-4.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	• 등록장애인	•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 적응 훈련, 취업알선, 지원고용,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	사업 수행기관 (장애인복지관, 단체, 직업재활 시설 등) 내방,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
5-5.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	• 등록장애인	•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	시 · 군 · 구에 상담
5-6.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	• 성년(만19세 이상) 등록 장애인 – 소득기준 :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–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※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(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,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) • 대여목적 : 생업자금,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※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	• 대여한도 – 무보증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내 단,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,500만원 이내) * 요건 :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– 보증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내 * 요건 :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– 담보대출 : 5,000만원 이하 • 대여이자 : 3%(고정금리) • 상환방법 : 5년 거치, 5년 분할 상환	읍 · 면 · 동에 신청

06 공공요금 감면

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6-1.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	•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–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– 15인승 이하 승합차 – 소형화물차(2.5톤미만)	•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(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)	관할 시 · 군 ·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(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)
6-2. 고궁, 능원, 국 ·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, 국 · 공립공원, 국 · 공립공연장,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	• 등록장애인 및 1~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– 국 ·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	• 입장요금 무료 ※국 · 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% 할인 ※공공체육시설 : 생활체육관, 수영장, 테니스장, 스키장 등	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제시
6-3.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	• 등록장애인 –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–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	•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※대부분 50%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	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제시
6-4. 철도 · 도시철도 요금 감면	• 등록장애인	•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(1~3급)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, 새마을호,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 • 등록장애인중 4~6급 – KTX, 새마을호 : 30% 할인(토 · 일,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) – 무궁화, 통근열차 : 50% 할인 • 도시철도(지하철, 전철) : 100%	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제시
6-5. 유선통신 요금 감면	• 등록장애인 • 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 복지시설	• 시내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 • 시외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 (월 3만원 한도) • 인터넷전화 : 월 통화료 50% 감면 *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: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% 감면 • 114 안내요금 면제 •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% 감면 *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(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), 시 · 내전화,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	해당 통신회사에 신청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6-6. 이동통신 요금 감면	• 등록장애인 • 장애인 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단체, 특수학교, 아동 복지시설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,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	• 가입비 면제 •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 한함) 35% 할인 *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, 월 최대감면액은 10,500원 *단,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(MVNO, 알뜰폰)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	해당 통신회사에 신청
6-7. 시·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	• 시각·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•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	• TV수신료 전액 면제 ※ 시·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	주소지 관할 한전지사, KBS수신료콜센터 (1588-1801), 인터넷 www.oklife.go.kr 또는 읍·면·동 자치센터
6-8. 항공요금 할인	• 등록장애인	• 대한항공(1~4급),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% 할인(1~3급 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) • 대한항공(5~6급 장애인) 국내선 30% 할인 ※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(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) 실시로 주말, 성수기,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(제주 노선부터 실시)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	장애인등록증 (복지카드) 제시
6-9.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	• 등록장애인	•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% 할인 (1~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) •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% 할인 (4~6급 장애인) *선사별,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	장애인 등록증 (복지카드) 제시 한국해운조합 (☎02-6096-2044)

주요사업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	비고
6-10.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	•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(배우자 · 직계 존속 · 직계비속 · 직계비속의 배우자 · 형제 · 자매)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(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)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– 배기량 2,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– 승차정원 7~10인승 승용자동차 (배기량 제한없음) –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–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※경차와 영업용차량 (노란색 번호판의 차량)은 제외	• 고속도로 통행료 50% 할인 – 일반차로 :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– 하이패스 차로 :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(하이패스 차로)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※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*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'장애인통합복지 카드' 신청 개시('14. 12月부터)	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 신청 :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: 전국 읍 · 면 · 동 사무소,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
6-11. 전기요금 할인	• 중증장애인(1급~3급)	• 전기요금 정액 감액(월 8천원 한도) – 문의전화 : 국번없이 123 – 인터넷 : www.kepco.co.kr	한국전력 관할지사 · 지점에 신청 (방문, 전화)
6-12. 도시가스 요금 할인	• 중증장애인(1급~3급)	• 주택용(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) 도시가스 할인 ※구비서류 : 장애인복지카드 사본, 실거주 확인서(주민등록등본등) • 한국도시가스협회(02-554-7721) – 인터넷 : www.citygas.or.kr	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· 지점에 신청 (방문, 전화)
6-13.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	• '장애인복지법'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, 직계 비속의 배우자, 형제, 자매)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– 승용차, 12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	•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~30% – 중증장애인(1급~3급) : 50% – 경증장애인(4급~6급) : 30% ※일반수수료 · 정기검사(15,000~25,000원) · 종합검사(45,000~61,000원) •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– 장애인차량표지(부착) 확인 후 · 장애인복지카드, 장애인증명서 등 • 장소 :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※일반검사소가 아님	교통안전공단 (문의) (☎1577-0990) www.ts2020.kr

※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
※ 공공요금(전기요금, 통신요금, TV수신료) 감면 · 할인 서비스 신청시 읍 · 면 · 동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One-Stop 처리(정부 3.0과제)

07 세제혜택

TAX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7-1.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	• 1~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· 직계존속 · 직계비속 · 직계비속의 배우자 · 형제 · 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※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	•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(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%한도) ※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	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
7-2.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	• 차량 명의를 1~3급(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)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· 비속(재혼포함), 직계 비속의 배우자(외국인 포함), 형제,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–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차 –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,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, 이륜자동차 중 1대	• 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 · 자동차세 면제	시 · 군 · 구청 세무과에 신청 (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)
7-3.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	•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 · 자매)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	• LPG 연료사용 허용(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) ※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	시 · 군 ·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7-4.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	•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※도지역에 해당	•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	시 · 군 ·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(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)
7-5. 소득세 공제	• 등록장애인	• 부양가족(직계존 · 비속, 형제 · 자매등) 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(소득세법 제50조) •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(소득세법 제51조)	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(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)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7-6. 장애인 의료비 공제	• 등록장애인	• 당해년도 의료비 –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% 공제	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(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)
7-7.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	• 등록장애인	•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% 공제	
7-8. 장애인 보험료 공제	• 등록장애인	•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– 연 100만원 한도, 15% 공제율 적용	
7-9. 상속세 상속 공제	• 등록장애인 –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· 비속, 형제, 자매	•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• 「상속세 과세가액」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·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(소수점 이하는 버림)를 곱한 금액을 공제 ※상속세과세가액 =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– (500만원×기대여명의 연수)	관할 세무서에 신청
7-10.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	• 등록장애인 – 친족으로부터 재산(부동산, 금전, 유가증권)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·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·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·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	•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※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· 신탁을 해지하거나,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·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·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	관할 세무서에 신청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7-11.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	• 등록장애인	• 부가가치세 감면 – 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, 점자판과 점필,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,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,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,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,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, 보조기(팔 · 다리 ·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), 지체장애인용 지팡이,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,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, 목발, 성인용 보행기, 욕창예방 물품(매트리스 · 쿠션 및 침대에 한함), 인공후두, 장애인용 기저귀, 텔레비전 자막수신기(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전파법」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),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,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,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,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, 화면해설방송수신기(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)	별도신청 없음 ※텔레비전 자막수신기(국가 · 지방자치단체 ·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)
7-12.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	• 등록장애인	•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•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·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	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
7-13.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	• 등록장애인	• 특허 출원 시 출원료, 심사청구료, 1~3년차 등록료,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• 특허 ·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% 할인	출원, 심사청구, 기술평가청구,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

08 지역사회 복지사업(재활시설) 및 기타

주요사업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	비 고
8-1. 주간 보호시설 운영	• 등록장애인	•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	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
8-2.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	•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	•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	
8-3. 장애인 복지관 운영	• 등록장애인 및 가족	• 장애인에 대한 상담, 의료재활, 직업 재활, 사회생활 적응지도,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	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
8-4.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	• 등록장애인	•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– 재가장애인을 방문, 상담, 의료 · 교육 재활,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	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
8-5.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	• 등록장애인 등	•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• 이용료는 재가장애인,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 이용료 부담	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
8-6.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	•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(보호자 포함)	•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– 셔틀 및 콜 운행 병용	시 · 도지사 운영 (국토교통부 소관 지방 이양 사업)
8-7.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	•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	• 여성장애인의 임신 · 출산 · 육아 및 가사 활동 지원을 위한 – 가사도우미 파견 – 산후조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 지원	해당지역 시 · 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

주요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비고
8-8.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	• 등록장애인	• 사업 내용 – 민원업무 대행, 직장 출 · 퇴근, 장보기, 이사짐 운반, 가사돕기, 취업안내 등 • 이용 요금 : 실비 • 사업 주체 :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	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 :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 ☎ 02-2092-0001 ☎ 02-2092-0088
8-9. 수화통역 센터 운영	• 청각 · 언어장애인	• 출장수화통역 – 관공서 · 법률관련 기관 방문,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•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• 청각 ·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	해당지역 수화 통역 센터에 신청 문의 : 한국농아인협회 ☎ 02-461-2261~2
8-10. 장애인 재활지원 센터 운영	• 등록장애인 및 가족, 관련 전문가	• 장애인과 가족지원 –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:정보제공 및상담, 장애인 IT대회 – 인권 · 교육지원사업 – 생활 · 문화지원사업 : 정서적, 사회적, 경제적 자원 제공 •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–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: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–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: 장애 이해와예방, 인식개선 활동	문의 : (사)한국장애인 재활협회 (☎ 02-3472-3556) www.freeget.net
8-11.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	•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	•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•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•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•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· 보급 등	문의 : (사)한국지적 장애인 복지협회 (☎02-592-5023) www.kaidd.or.kr
8-12.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	• 시 ·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	• 주요업무 기능 –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–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–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	시 · 도지사
8-13.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 운영	•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	• 주요업무 기능 –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–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–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,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	문의 : (사)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(☎02-799-1021)

주요사업명	지 원 대 상	지 원 내 용	비 고
8-14.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	• 한국지체장애인협회, 17개 시 · 도 협회 및 시 · 군 · 구지회	• 주요업무 기능 –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–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–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,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	문의 : (사)한국지체장애인협회 (☎02-2289-4343)
8-15.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	•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	•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	읍 · 면 · 동에 신청

09 <참고> 소득기준표

○ **2016년도 기준중위 소득**

(단위 : 원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기준중위 소득	1,624,831	2,766,603	3,579,019	4,391,434	5,203,849	6,016,265	6,868,680

※ 8인가구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마다 812,415원씩 증가(8인가구 7,641,095원)

○ **2016년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**

(단위 : 원)

구 분	소득 50%이하	소득 70%이하	소득 100%이하	비고
3인 가구 이하	2,408,330	3,371,600	4,816,665	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 금액
4인 가구	2,696,570	3,775,200	5,393,154	
5인 가구	2,737,700	3,832,780	5,475,403	
주택소득기준	국민임대 49㎡	장기전세 59㎡이하	10년 공공임대주택	

Memo

더불어 행복한 사회

바른 말 쓰기부터 함께해요

하나! 장애우, 장애자는 **장애인**으로
둘! 일반인, 정상인은 **비장애인**으로

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잘못된 표현들.

바른 언어사용의 실천이
올바른 인식의 첫걸음이 됩니다.

바른말 쓰기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'더불어 행복한 사회'
보건복지부가 응원합니다.

보건복지부
www.mohw.go.kr